

##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임희연(Lim, Hee-yeon)\*

1. 머리말
2. 기록관의 개념과 현실
3. 교육청 기록관 현황 및 문제점
  - 1)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구조 및 환경
  - 2) 관할 처리과와 전문요원 배치
4.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정비
  - 2)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 3)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가칭)' 제정
5. 맺음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 투고일: 2018년 10월 1일 ■ 최초 심사일: 2018년 10월 4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15일

## 〈초록〉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제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성, 기록관, 통합기록관, 집중근무제, 전문요원, 배치기준, 교육관련 기관 기록관리 특례법**

## 〈Abstract〉

The foremost priority for establishing recor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records centers in the institutions and creating the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for demonstrating professionalism of archivists. However, concept of current records center is not clear and there is no substance of the organization. It also says that once a records manager is deployed, a records center is founded since appointment criteria for archivists is prone to be interpreted subjectively by the institutions. Therefore, it's time for more concrete improvements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research analyses some problems found in the system of records centers in the main office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environment of them. The problems are centers without substance i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because of the organization structure that all authority has been assembled in the main office, and the reality of records managers who have fallen into records discarders,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changing the appointment criteria for archivists, operating an integrated records center reflecting the intensive working system, and legislating special act on record mana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Keywords** : office of educati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professional ethics,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centralize work, work in groups, archivists, records managers, appointment criteria, special act on record mana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 1. 머리말

최근 사회적으로 기록관리 사안이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중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향<sup>1)</sup>이 두드러지고 있어, 기관 내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은 대부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기록관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기

---

### 1) 관련 기사

- ‘기록물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모든 자료 영구보존(연합뉴스 2018. 4. 20.) 외.
- “영포빌딩 대통령기록물 유출 조사·처벌해야”(아시아경제 2018. 1. 20.) 외.
-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 검찰 “유출 수사 검토”(SBS 2018. 1. 31.) 외.

록관'이란, 기관 내 조직구조의 아무런 변화 없이 행정지원 부서 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만 임용 후 배치하고 이를 기록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기록관'과 그 안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기관 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수없이 해왔지만 언제나 그저 성토에 그치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법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기록관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sup>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록관에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정책 수립'으로의 변경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과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이미 각 기록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은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에도 포함된 기록관리 업무의 한 분야로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 접수'를 기록관 고유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도 현재 기록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제외한다고 해서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법 개정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탓인지 이번 개정으로 과연

---

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개정 주요내용.

4)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안 제13조, 제14조)

- 각급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현행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이관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로 포괄하여 정의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을 신설함
-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함
- '정보공개 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기록관의 고유 기능에서 제외함(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5호 삭제)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 물론 다양한 여러 유형의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니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또 시행령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나, 기록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가행정사무 중 해당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며, 교육감에 의한 단일 행정지휘체계를 갖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재 교육청 조직구조 속에 기록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 변경과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이란 새로운 기록관 운영 모델,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교육기관의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 2. 기록관의 개념과 현실

매년 국가기록원은 기록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문을 받고 회신공문을 작성하다보면 해당 서식에 내용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매우 난감할 때가 있다. 과연 우리 조직에 기록관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기관 조직도 어디에 기록관이 있는가? 기록관 정원은 몇 명이며 근무자는 누구인가? 기록관장은 우리 과장인데, 당사자는 알고 있을까? 우리 총무팀장은 기록관 정원에 포함되나? 등등 고민을 넘어서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된다.

공공기록물법에서 기록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sup>3)</sup> 이러한 기록관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sup>4)</sup> 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기록관은 하나의 기관 단위로 해석 되는데 그런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라는 것은 즉, ‘기관’을 ‘처리과 내에 설치’하라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고 판단된다(이용훈 2016, 148).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라는 원칙만 염두에 두고 예전부터 문서수발을 담당하던 총무과 또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등 행정지원 부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그러나 인력만 배치했을 뿐 기관의 조직도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그 어디에도 ‘기록관’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기록관의 실체는 무엇인가? 분명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sup>5)</sup>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관’이란 그저 논리적이고 무형적인 조직이란 말인가? 이렇게 모호한 기록관의 존재를 두고 ‘기록관의 실체는 유령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남경호 2016, 145-146).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 배치하고 유명무실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렇듯 존재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기록관의 인력구성에 대해 기록물관리기관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고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도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행정지원 부서에 전문요원 1명만 배치된 현실에서는, 공공기관의

- 
- 3)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 4)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②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공공기록물법」 제13조(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6)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원 설정 기준이 처리과 단위임을 고려하면 기록관 정원을 산정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이세진 2017, 2).

따라서 지금처럼 기록관이 처리과 단위인지, 기관 단위인지 아니면 처리과 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개념인지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개념과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최소한 하나의 독립적인 처리과 단위로 설치·운영되어야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본청에 대부분 기록물관리팀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하여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등으로 구성되어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비록 팀 단위이지만 인프라 구성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는 기록물관리기관, 즉 기록관과 비슷하게 구성 및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하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기록관리만 전담하는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sup>7)</sup> 대부분은 그저 어느 팀인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이 팀원으로 포함되어, 본청 기록관리팀에서 여러 직렬의 구성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혼자서 모두 다 담당하고 있다. 물론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록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도 담당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흔히 ‘1인 기록관’ 체제라고 말하는데, 기록관의 존재가 불확실하다보니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는 기록관의 업무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분장이 되어 혼자 모두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록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말조차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

---

7)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개의 교육지원청에 ‘기록·정보팀’이 있으나 주업무가 전산 관련 업무이고 기록관리 업무는 1명의 전문요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도 5개의 교육지원청에 ‘예산·기록관리팀’이 있으나 기록관리 업무는 전문요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혹자는 ‘기록관’을 사무관, 서기관 등과 같은 직급으로 생각하고 전문요원을 ‘기록관님’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기록관은 조직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아픈 현실이다.

기관 내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이렇듯 실체도 없는 ‘기록관’의 운영 속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록관’에 대한 개념적, 체제적, 기능적 등 여러 가지 현실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 9.~12.) 보고서와 관련 논문(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2018, 7-15)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옮겨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록관’이란 조직의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로써 기관의 행정기구 조직상에 ‘기록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직구조에 확실하게 반영된 기록관이 존재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함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기관 내 기록관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청 기록관 현황 및 문제점

#### 1)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구조 및 환경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광역시·도교육청인 본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있다. 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4년 임기제이며 지방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요업무는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정원 배정 및 소속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그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sup>8)</sup>

반면에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은 교사출신 장학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며, 본청에서 위임받은 일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분장한다. 주로 교육장의 임기는 1년~2년 정도이고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9)</sup> 사실상 교육장의 권한은 일선학교의 지도·감독에 국한되며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지시대로 업무를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도 단위인 본청에서 교육감에 의해 실현이 가능하지만, 시·군·자치구 단위에서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sup>11)</sup> 예산, 인사, 감사, 조직, 정원, 교육정책 등 대부분의 업무에 대하여 본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본청과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그 조직체계가 개별적으로 수평적인 독립기관이 아니라 상하 수직적인 구조로 권한과 업무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인 구조의 동등한 기록관을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 8) 「교육자치법」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관장사무),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 9) 「교육자치법」 제3장 교육감 제4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 10)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시사상식사전(pn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검색일자: 2018. 9. 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447&cid=43667&categoryId=43667>.
  - 11) 「교육자치법」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기록관의 권한과 업무를 구분하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관할 처리과의 대상이다. 본청 기록관에서는 주로 공·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을 관리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는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관리한다. 본청 기록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교육지원청 기록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관대상 기록물도 교육지원청 보유기록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해당 공문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만 발송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 후 취합·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상하구조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구조의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업무진행 상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록관 운영 규정'의 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은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본청 기록관에서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정<sup>12)</sup>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제정된 규정을 근거로 지침 정도로만 자체 운영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은 제한된 예산 운영이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장은 교육비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청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어렵다.<sup>13)</sup> 기관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정해져 배정되면 그 예산 내에서 배분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기관의 정해진 예산 내에

12)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혼령으로 기록관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기록관 운영 규정 외에 추가로 2018. 6. 7.에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18. 9. 20. <http://www.law.go.kr/LSW/main.html>).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감(본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에 배분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4. 18).

서 기록관리 예산을 많이 요청하면 다른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서 서고 내 이동식서가 교체 및 구입을 위한 예산이나 향온합습기 설치 등과 같은 큰 금액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본청 기록관에서 일괄 추진하거나 또는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예산을 대신 신청 후 배정받아 각각의 교육지원청에 재원배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므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사업이나 전자문서 이관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은 대부분 본청 기록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이나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도 일괄 관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열람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처리만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정원확보 및 인사관리도 역시 본청의 권한이고 본청에서 업무를 총괄한다.<sup>14)</sup>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지원청에서 최소 1명 이상 정원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필요한 정원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전문요원 소요 정원이 많으므로 배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치된 전문요원의 인사발령도 교육지원청의 기관의사와 무관하게 본청의 권한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본청은 기록관리팀으로 구성·운영되지만, 교육지원청은 부서의 팀원 1명으로 근무한다. 그러므로 본청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 전문요원은 본청의 기록관리팀 구성원 여러 명이 하고 있는 업무를 혼자서 모두 담당한다.<sup>15)</sup> 서

1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전산직 4명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있으나, 이들은 본청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내려오는 업무만 본인들 업무라고 하여 기록관리팀에서 내려오는 모든 공문은 기록연구사가 접수하고 해당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심지어 업무관리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문의도 기록연구사가 담당하며, 이외에도 문서접수 및 배부, 국민신문고 및 제증명의 민원업무, 우편물 및 수발실 관리, 학교정보공시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된 팀장도 본청처럼 기록관리만 전담하는 기록관리팀장이 아니고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인사, 청사관리, 각종 행사 및 의전, 정보보안, 재정관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언제나 기록관리 업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저 국가기록원의 기관평가를 위해 업무분장에 '기록관리 업무총괄 및 기록관 운영'이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가 있을 뿐, 기록관리를 주업무로 생각하거나 중요한 업무라고 관심을 갖는 일은 거의 없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기록물 정리 안내 공문을 시행했는데, 관내 학교에서 오는 문의전화에 본청 기록관리팀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해서 본청 기록관리팀에서는 본래의 관할 학교와 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더해져 문의전화 폭주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다.

이렇듯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록관리 업무에 대하여 전문요원 혼자 알아서 하는 업무라고 관심 밖에 있거나 또는 다른 행정업무와 같이 본청 기록관의 업무지시를 따라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로는 교육지원청 전문요원의 소속이 해당 기관이 아니라 마치 본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은 예산, 정원,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기록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

---

15)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본청의 기록관리팀은 팀장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 및 행정업무는 행정직,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산직, 간행물 및 자료실 관리는 사서직이 담당하고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모든 업무를 기록연구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다. 모든 주요업무에 대한 권한이 본청에 집결되어 있으므로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도 그 업무가 본청 기록관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와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육지원청의 전문요원은 사기저하와 의욕상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기관의 기록관리 발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청의 조직구조 및 체계가 비슷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교육청은 거리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집중되거나 의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라도 교육청 기록관 체계를 재편성하여 기록관리의 발전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2) 관할 처리과와 전문요원 배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한 경과조치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였다.<sup>16)</sup> 이 시한이 경과한지도 어느덧 9년째인 지금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요원 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다.

2015년 7월에 조사한 현황과 올해 2018년 5월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난 3년간 배치 미완료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위한 정원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같은 광역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수에 비해 학교와 학생 수도 많고 또 필요한 전문요원 소요정원이 적어 현재 배치완료가 되

---

16)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있으나,<sup>17)</sup> 상대적으로 학교 및 학생 수에 비해 많은 정원을 필요로 하는 도 단위의 경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문제를 해당 지원청에 재촉하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정원배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각 기관마다 최소 1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청에서 교육지원청까지 정원관리를 총괄하는 교육청의 조직구조에서 다른 직렬의 정원을 빼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을 많게는 25명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임희연 2015).

〈표 1〉 전국 시도교육청 기록연구사 배치 현황

구분	기관 수			2015년 <sup>18)</sup>				2018년 <sup>19)</sup>				비고
				배치인원			배치율	배치인원			배치율	
	계	본청	지원청	계	본청	지원청		계	본청	지원청		
서울특별시	12	1	11	13	2	11	108%	13	2	11	108%	
부산광역시	6	1	5	6	1	5	100%	6	1	5	100%	
대구광역시	5	1	4	5	1	4	100%	5	1	4	100%	
인천광역시	6	1	5	6	1	5	100%	6	1	5	100%	
광주광역시	3	1	2	3	1	2	100%	3	1	2	100%	
대전광역시	3	1	2	3	1	2	100%	3	1	2	100%	
울산광역시	3	1	2	3	1	2	100%	3	1	2	100%	
세종특별자치시	1	1	-	1	1	-	100%	1	1	-	100%	
경기도	26	1	25	10	1	9	38%	9	1	8	35%	7명 채용예정 (배치 후 62%)
강원도	18	1	17	6	1	5	33%	11	1	10	61%	4명 채용예정 (배치 후 83%)
충청북도	11	1	10	8	1	7	73%	10	1	9	91%	1명 채용예정 (배치 후 100%)
충청남도	15	1	14	7	1	6	47%	12	1	11	80%	
전라북도	15	1	14	2	1	1	13%	7	1	6	47%	
전라남도	23	1	22	3	1	2	13%	7	1	6	30%	
경상북도	24	1	23	5	1	4	21%	6	1	5	25%	
경상남도	19	1	18	19	1	18	100%	19	1	18	100%	
제주특별자치도	3	1	2	3	1	2	100%	3	1	2	100%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없어서 제외함.

18) 한철희,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의 쟁점과 과제 발표문 「학교기록관리와 교육청 기록관」, 2015.

게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모이다. <표 2>에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개의 교육청을 비교해보자. 현재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보면 배치완료 된 경남교육청에 비해 전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적지만, 교육지원청 수는 오히려 더 많다. 또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전체 학생 수와 학교 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교육지원청 수는 전남교육청이 8개가 더 많다.

<표 2>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별 처리과 현황<sup>20)</sup>

구분	기관 수			처리과 수						학생 수		기록관당 관할 처리과 수 (유치원 포함)
				합계			직속 기관	학 교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본청	지원청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청내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서울특별시	12	1	11	2,359	1,483	98	29	2,232	1,356	993,552	916,870	197
부산광역시	6	1	5	1,116	703	45	19	1,052	639	366,759	322,398	186
대구광역시	5	1	4	883	514	36	19	828	459	309,734	271,259	177
인천광역시	6	1	5	1,014	592	41	16	957	535	364,338	322,181	169
광주광역시	3	1	2	671	357	25	12	634	320	214,181	189,572	224
대전광역시	3	1	2	611	342	26	8	577	308	200,706	176,694	204
울산광역시	3	1	2	477	280	25	10	442	245	156,181	137,636	159
세종특별자치시	1	1	-	161	102	13	1	147	88	50,034	43,641	161
경기도	26	1	25	4,852	2,577	124	21	4,707	2,432	1,700,287	1,510,642	187
강원도	18	1	17	1,126	753	51	34	1,041	668	179,034	162,113	63
충청북도	11	1	10	910	570	51	24	835	495	195,031	177,463	83
충청남도	15	1	14	1,327	816	53	28	1,246	735	271,359	230,254	88
전라북도	15	1	14	1,378	847	46	24	1,308	777	236,264	211,967	92
전라남도	23	1	22	1,551	1,000	74	29	1,448	897	220,496	200,820	67
경상북도	24	1	23	1,792	1,083	70	32	1,690	981	312,630	273,002	75
경상남도	19	1	18	1,815	1,124	70	61	1,684	993	437,691	386,415	96
제주특별자치도	3	1	2	353	234	24	12	317	198	87,040	80,943	118

<그림 1>의 ‘기록관당 관할 처리과 수’에서 전체 학교 수와 학생 수의 규모가 비슷한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을 비교하면 전북은 1개의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처리과 수가 평균 92개인데 전남은 평균 67개이다. 대체적으

- 19) 전남교육청에서 2018년 5월 기준 조사한 자료.
- 20) 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2018년 통계 ‘나이스 교육통계 전국 학교 개황’ 자료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임.

로 1개의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처리과 수가 적은 강원, 전남, 경남 등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전국 시·도교육청 기관별 관할 처리과 현황 참고].

〈그림 1〉 기록관당 관할 처리과 수



그러다보니 기관 내에서 이런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수와 학생 수 등 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요원의 배치율이 낮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보면, 대부분 관할 학교 수나 학생 수가 광역시에 비해 매우 적은 도 단위의 소도시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다. 현재 낮은 출산률과 도시로의 이동 등, 감소되는 학생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전산, 보건, 특수교육, 시설관리 등의 특장업무를 수행하는 ‘거점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다.<sup>21)</sup>

이런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정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관 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에서 시작된 문제이므로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표 2>를 보면 관할 처리과 수 합계를 유치원 포함과 미포함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처리과 수를 물으면 유치원 포함여부에 대해 항상 되묻게 된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유치원<sup>22)</sup>도 각급학교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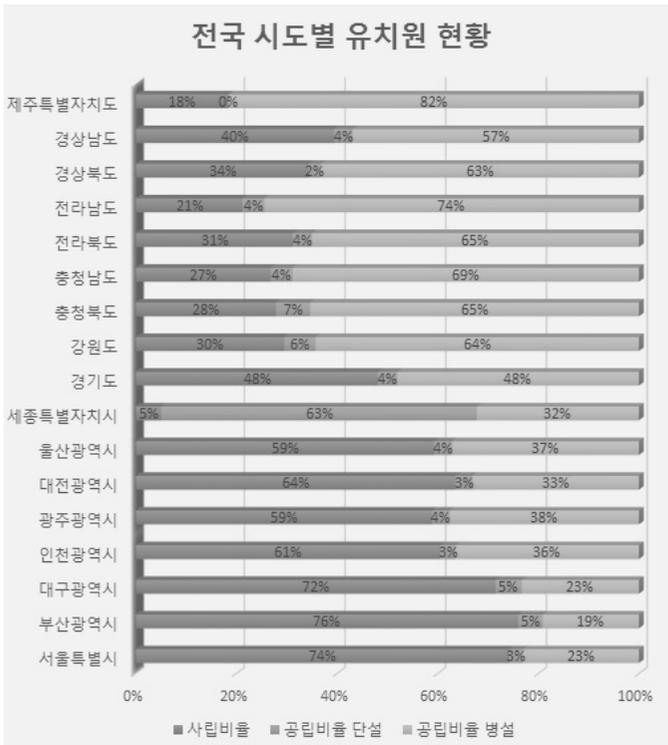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유치는 공·사립 모든 유치원이지만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또 사용한다고 해도 원장 1명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유통만 하고 있으므로 모든 생산·접수 기록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원과 폐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과 병설로 구분되는데, 단설유치원은 단독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하나의 처리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물 보존서고도 같이 사용하고 기록물관리책임자도 초등학교 담당자가 유치원까지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나의 처리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도 단위 소도시의 병설유치원은 그 학

- 
- 21) 강원, 경북, 전남, 충북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
  - 2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영아유치원'은 명칭과 달리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에 속하므로 국가에서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시설의 형태와 원장에 따라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으로 나뉜다.
      - 단설유치원 :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원장을 맡음
      - 병설유치원 :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이 함께 있어 초등학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임한다.
    - 사립유치원 :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私人, 특정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생 수가 광역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과 비교하여 매우 소수이므로 업무량을 고려해도 하나의 처리과로 보기엔 부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나 관할 처리과 수를 산정할 때 유치원 포함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림 2〉와 〈표 3〉의 유치원 현황을 보면 광역시교육청은 대부분 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편이며, 도 단위 교육청은 반대로 사립보다 공립유치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단위 교육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처리과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해도 대부분이 단설이 아닌 병설 유치원이므로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

〈그림 2〉 전국 시도별 유치원 현황



〈표 3〉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별 유치원 현황<sup>23)</sup>

구분	합계	공립			사립	사립 비율	공립비율			비고
		계	단설	병설			계	단설	병설	
서울특별시	876	226	24	202	50	74%	26%	3%	23%	
부산광역시	413	99	20	79	314	76%	24%	5%	19%	
대구광역시	369	105	19	86	264	72%	28%	5%	23%	
인천광역시	423	167	13	154	256	61%	39%	3%	36%	
광주광역시	314	129	11	118	185	59%	41%	4%	38%	
대전광역시	269	98	9	89	171	64%	36%	3%	33%	
울산광역시	197	80	7	73	117	59%	41%	4%	37%	
세종특별자치시	59	56	37	19	3	5%	95%	63%	32%	
경기도	2,275	1,179	87	1,092	1,096	48%	52%	4%	48%	
강원도	372	262	23	239	110	30%	70%	6%	64%	
충청북도	340	245	23	222	95	28%	72%	7%	65%	
충청남도	510	373	22	351	137	27%	73%	4%	69%	
전라북도	531	365	20	345	166	31%	69%	4%	65%	
전라남도	551	434	24	410	117	21%	79%	4%	74%	
경상북도	709	465	17	448	244	34%	66%	2%	63%	
경상남도	691	418	25	393	273	40%	60%	4%	57%	
제주특별자치도	119	97	-	97	22	18%	82%	0%	82%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과 작은 곳을 비교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편차는 매우 크다. 규모가 가장 큰 교육지원청은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청 내 처리과가 9개, 관내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374개, 직속기관 1개를 포함하여 총 384개의 처리과를 관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은 청 내 처리과가 2개, 관내 학교가 유치원 포함 15개, 여기에 직속기관 1개를 포함해서 관할 총 처리과는 18개다.

관할 처리과 수는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이 거의 20배가 많으며, 학생 수를 비교하면 200배 가까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일 유치원 중 단설 유치원만 처리과 총합에 포함한다면 경남 창원은 5개이므로 총 191개이고, 경북 울릉은 단설유치원이 없어 그대로 12개이므로 울릉교육지원청의 규모

23) 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2018년 통계 '나이스 교육통계 전국 학교 개황' 자료.

〈표 4〉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별 현황 비교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유치원 수			직원 수	학생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사립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단설	병설				
경남창원교육지원청	384	186	9	1	374	176	198	5	89	104	약 220명	104,547	87,014
경북울릉교육지원청	18	12	2	1	15	9	6	0	5	1	약 30명	534	416

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교육지원청도 동일하게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정원확보는 어렵고, 적재된 기록물 폐기는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일부 기관에서 기록물 폐기를 위해 단기간 근무 후 전문요원 순환발령이라는 새로운 인사방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최소 인원의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1년 정도 주기 인사발령을 통해 관내 학교의 기록물 폐기만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내학교의 기록물 폐기 후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또 그 관내학교의 기록물 폐기를 진행해야 한다. 심한 곳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 후 평가심의회까지 마치면 폐기집행은 다른 직원이 수행하게 하고 바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관 내에서도 매년 정원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요원은 기록물 폐기를 위해 채용된 사람이고 또 기관에서는 폐기를 위해서만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각 교육지원청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처음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는 이런 상황을 예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지 18년째,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이 지나고도 9년, 그동안 미배치 된 교육지원청에 전문요원 배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기관 내 기록관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앞서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구조 및 그 환경,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으로 인해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해버린 전문요원의 현실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의 변경’과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록물법을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만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특례법의 제정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정비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최소 1명만 배치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할 처리과 수가 12개인 경우도 1명, 566개인 경우도 모두 1명씩만

배치되어 처리과 수가 566개와 같이 많은 경우에는 1명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처리과 수가 많다고 전문요원을 더 채용하지는 않으면서 처리과 수가 적은 경우엔 기록관리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록관리 외의 업무를 더 분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규모가 가장 작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처리과 수가 34개인데 본청은 566개로 거의 17배가 된다. 이렇듯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모가 전국에서 최대인 만큼 지역별 편차도 커서 현재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한철희 2016, 139).

그러므로 전문요원 배치기준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 또는 존재 자체도 모호한 기록관 정원 기준이 아니라 전문요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배치기준을 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관할 처리과 수 및 학생 수와 이에 따른 업무량 등이 반영되고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처리과 수 또는 학생 수, 기록물 생산량 등 어느 특정한 조건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조건을 조합하고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기록원, 행정 및 기록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요원의 배치기준 정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기관 내 임용되어 배치된 전문요원의 정원이다. 오히려 현재의 임용된 전문요원의 정원이 과원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비된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에 의해 전문요원의 정원이 모두 확보된 교육청은 현재처럼 각각의 교육지원청에 1명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근무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기록관의 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현재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내에서 관리하는 처리과는 적게는 2개에서 많은 곳이 9개이고 관할 처리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급학교는 모두 기관 외부에 있다. 관리대상 전체의 95% 이상인 학교가 외부에 있는데 나머지 5% 이내인 2개 또는 9개의 처리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이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부족하다.

또 교육청 전문요원은 연구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일반직 다른 직렬과 동일하게 일정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통 2년~3년 주기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관의 전문요원은 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개편과 변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인간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같은 조직 내에서의 이동이라고 해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조직과 관할 처리과에 대한 적응 및 각 처리과 기록물관리 책임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 및 관계형성이 좀 됐다 싶으면 또 이동을 해야 하므로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나 기관 내에서의 기록관리 발전이란 있을 수가 없고 그저 현상유지일 뿐이다. 또한 이동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넓은 도 단위의 경우, 기혼자는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 큰 장애점이 발생할 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생활여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력운영방식은 가정과 개인의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여건 추구라는 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이창순 2016, 35).

다른 일반직은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할 곳이 많다. 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배우고 업무능력을 키워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무지가 본청이나 교육지원청뿐이므로 이동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또 기관 내에서 어느 기관으

로 가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주기의 순환발령은 그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2018, 16) 오히려 기관의 기록관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기관별 편차가 큰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전문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서로의 형평성도 떨어진다. 즉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전문요원 증원은 해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곳에서는 기록관리 외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앞서 말했던 교육청 조직체계와 공공기록물법 기록관 체계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기록관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중근무 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기록관은 최소한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며, 반드시 기관의 조직도에 반영되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도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한 곳에 모여진 하나의 기록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근무지 및 관할지역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모여서 근무할 수 있는 집중근무방식이 반영된 새로운 기록관 운영 모델을 의미한다. 통합기록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운영하도록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청 한 곳에 모두 모여서 근무할 수도 있고, 도 단위의 경우 지역의 거리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두 세군데 지역에 각각 모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근무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근무하게 되면, 기존에 혼자서 기록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분류, 기관, 평가·폐기, 교육,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전문성도 키울 수 있으며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물 정리방법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등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진행으로 학교 현장에 전문요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감도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초, 중, 고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데, 학교방문이나 기록물 폐기 진행이

초, 중, 고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현재처럼 관리 주체가 달라서 제각각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

전문요원이 근무하던 교육지원청은 충분한 기록관리 교육을 수료한 행정 직을 배치하여 학교를 제외한 청 내 처리과 기록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을 통합기록관에서 관리하면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의 기록물관리 책임자가 교무실과 행정실 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존대로 현재 배치된 전문요원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증원하여 통합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증원은 기관 내에서도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통합기록관 추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는 통합기록관에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후 통합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기관 내에서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가배치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기록관은 각각의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어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의 모태가 될 것이다. 또한 최소 처리과 단위로 구성 및 운영하는 통합기록관은 기존의 기록관과 다른 위상을 가지고 전문요원의 전문성 시너지 효과와 함께 기관 내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가칭)' 제정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로부터 10년 후, 2008년에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sup>24)</sup> 이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특례로 제정한 것

이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례법이 제정된 것은 교육관련 기관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제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한다(우지원, 설문원 2015, 156).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청은 그 조직구조와 성격이 일반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과 확연하게 구분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일반 행정기록물과는 그 성격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 위주의 획일화된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에는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 기록물의 이관과 폐기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처리과의 기록물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고 이렇게 이관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 후 폐기집행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기록물의 이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록물 목록만 받아서 평가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폐기를 집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처리과인 학교에 보존서고가 있음을 어떤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있다.<sup>25)</sup>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과 같이 학교에서만 생산되는 기록물의 경우, 나이스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되어 학생이 졸업 후에도 제증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 활용된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비치기록물 지정여부, 이관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어 현재는 일종의 방치에 가까운 상황이다.

---

24)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학교기록물의 이관 미실시로 인하여 처리과인 학교에 자체 기록물 보존환경을 구비할 것을 '학교기록물관리 지침'(기록관리 표준)에 명시하였으며,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 중 '학교기록물 보존환경'에 대한 항목이 있어 학교보존서고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 처리과의 대부분이 학교인 교육청 환경에서 현재의 공공 기록물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규정과 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례법은 교육관련 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기준과 이 기준에 따라 전문요원이 배치완료 된 경우에는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을 광역시와 시·도 단위의 교육청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교육청 조직구조와 이 체계에서 운영되는 기록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기준 정비와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그리고 이러한 환경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교육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제안 중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기준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의 모든 조건이 잘 조합되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다양한 기관의 유형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하나로 손꼽히는 교육청 환경에서 기록관 운영의 체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제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실제 없는 기록관의 미비한 역할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사기저하 및 의욕상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이로써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기록관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남경호. 2016. 기록관 체제의 재검토: 기록관의 존재 가치 재검토.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문찬일. 2016. 기록관 체제의 재검토: 어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발칙한 문제제기와 황당무계한 상상.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박종연. 2016. 기록관리의 기본-전문성.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박형호. 2016. 기록관 체제의 재검토: 기록관의 변화(교육청 사례).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기록학연구』, 56, 5-48.
- 설문원. 2018.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제42호(2018년 봄호), 12-23.
- 우지원. 설문원. 2015. 통합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153-180.
- 이세진. 2017. 기록관에서의 제도·업무기능 개선 방안. 기록정책포럼[자료집](2017.05.13.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이영남. 2018. 국가기록혁신과 기록담론. 『기록학연구』, 56, 49-80.
- 이용훈. 2016. 기록관 체제의 재검토: 기록관의 변화.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이창순. 2016. 교육청 현장의 기록관.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임희연. 2015.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방안. 국가기록관리정책토론회: 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의 쟁점과 과제[자료집](2015.07.15.) 서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최운진. 2016. 기록관 체제의 재검토: 기록관의 변화.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한철희. 2016.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향.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2016.10.14.~15.). 서울: 전국기록인대회.

## 〈참고 사이트〉

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http://edp.sen.go.kr/fmk/EDPSSOLogin.do>)의 2018년 통계  
『나이스 교육통계』 전국 학교 개황. 검색일자: 2018. 9. 1.

〈부록〉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별 관할 처리과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학생 수		유치원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단설	병설	사립
서울 특별시	본청	412	412	21	29	362	362	264,338	264,338	-	-	-	-
	동부	146	80	7	-	139	73	49,395	43,041	66	3	14	49
	서부	220	124	7	-	213	117	84,836	75,501	96	3	23	70
	남부	201	107	7	-	194	100	69,114	69,114	94	2	24	68
	북부	209	112	7	-	202	105	77,247	67,922	97	1	14	82
	중부	122	74	7	-	115	67	31,763	27,767	48	1	12	35
	강동송파	209	118	7	-	202	111	88,090	77,707	91	3	20	68
	강서양천	217	114	7	-	210	107	89,888	79,060	103	2	23	78
	강남서초	173	105	7	-	166	98	82,010	75,068	68	5	19	44
	동작관악	155	82	7	-	148	75	55,286	47,966	73	2	18	53
	성동광진	141	74	7	-	134	67	46,222	40,564	67	1	18	48
부산 광역시	성북강북	154	81	7	-	147	74	55,363	48,822	73	1	17	55
	본청	194	194	15	19	160	160	92,602	92,602	-	-	-	-
	서부	166	95	6	-	160	89	42,304	36,187	71	1	14	56
	남부	184	104	6	-	178	98	55,215	46,486	80	3	15	62
	동래	177	100	6	-	171	94	56,802	48,587	77	2	12	63
	북부	196	108	6	-	190	102	53,713	42,815	88	7	17	64
대구 광역시	해운대	199	102	6	-	193	96	66,123	55,721	97	7	21	69
	본청	141	141	15	16	105	105	79,934	79,934	-	-	-	-
	동부	248	121	5	-	243	116	82,178	69,858	127	6	29	92
	서부	191	91	5	-	186	86	53,975	44,933	100	2	31	67
	남부	205	108	5	-	200	103	66,719	55,657	97	3	16	78
인천 광역시	달성	98	53	4	-	94	49	26,928	20,877	45	8	10	27
	본청	171	171	15	16	140	140	86,745	86,745	-	1	-	-
	남부	177	91	6	-	171	86	51,143	43,420	85	2	31	52
	북부	136	69	6	-	130	63	44,599	38,410	67	1	24	42
	동부	238	111	6	-	232	105	92,378	77,199	127	4	35	88
	서부	237	114	6	-	231	108	85,115	72,592	123	4	48	71
광주 광역시	강화	55	35	2	-	53	33	4,358	3,815	20	1	16	3
	본청	98	98	13	12	73	73	54,924	54,924	-	-	-	-
	동부	221	97	6	-	215	91	48,827	41,353	124	4	47	73
대전 광역시	서부	352	162	6	-	346	156	110,430	93,295	190	7	71	112
	본청	92	92	14	8	70	70	50,566	50,566	-	-	-	-
	동부	227	115	6	-	221	109	58,563	49,804	112	5	34	73
울산 광역시	서부	292	13	6	-	286	129	91,577	76,324	157	4	55	98
	본청	85	85	13	10	62	62	38,469	38,469	-	-	-	-
	강북	200	97	6	-	194	91	64,510	53,634	103	4	34	65
세종특별 자치시	강남	192	98	6	-	186	92	53,202	45,533	94	3	39	52
	본청	161	102	13	1	147	88	50,034	43,641	59	37	19	3
경기도	본청	566	566	31	21	514	514	398,144	398,144	-	-	-	-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학생 수		유치원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사립
										단설	병설	
수원	355	160	7	-	348	153	123,334	103,149	195	8	83	104
성남	258	125	7	-	251	118	83,481	72,633	133	8	44	81
부천	229	103	6	-	223	97	72,839	61,905	126	3	46	77
안양·과천	166	77	6	-	160	71	56,328	49,501	89	2	33	54
안산	188	90	6	-	182	84	63,131	54,795	98	2	38	58
용인	332	159	6	-	326	153	117,325	99,771	173	1	95	77
군포·의왕	133	60	2	-	131	58	39,290	34,026	73	-	33	40
시흥	141	69	2	-	139	67	45,955	40,134	72	4	38	30
평택	196	86	2	-	194	84	51,288	43,520	110	1	58	51
화성·오산	386	171	6	-	380	165	127,969	104,367	215	12	111	92
광명	88	38	2	-	86	36	32,351	28,556	50	3	22	25
광주·하남	150	76	6	-	144	70	52,135	46,259	74	5	46	23
김포	159	66	2	-	157	64	50,103	39,846	93	6	38	49
이천	102	49	2	-	100	47	22,111	19,357	53	-	31	22
안성	103	52	2	-	101	50	18,205	15,724	51	1	33	17
여주	75	41	2	-	73	39	9,450	8,259	34	-	24	10
양평	62	37	2	-	60	35	8,533	7,915	25	1	21	3
고양	307	132	6	-	301	126	98,469	84,227	175	8	58	109
구리·남양주	269	127	7	-	262	120	91,686	78,653	142	6	73	63
의정부	118	54	2	-	116	52	39,192	34,072	64	4	30	30
파주	183	84	2	-	181	82	48,985	41,392	99	5	52	42
동두천·양주	131	63	2	-	129	61	30,575	26,962	68	3	40	25
포천	82	47	2	-	80	45	11,828	10,664	35	2	23	10
가평	39	24	2	-	37	22	4,500	4,178	15	1	12	2
연천	34	21	2	-	32	19	3,080	2,633	13	1	10	2
본청	170	170	14	32	124	124	47,632	47,632	-	-	-	-
춘천	109	64	3	-	106	61	26,029	22,636	45	3	20	22
원주	147	75	3	-	144	72	34,641	29,691	72	3	33	35
강릉	90	52	3	-	87	49	17,584	15,370	38	3	22	13
동해	40	23	2	-	38	21	8,833	7,605	17	2	6	9
태백	33	21	2	-	31	19	3,752	3,373	12	2	7	3
속초·양양	64	40	2	-	62	38	8,525	7,718	24	2	18	4
삼척	51	34	2	-	49	32	4,962	4,173	17	2	10	5
홍천	69	43	2	-	67	41	5,066	4,459	26	1	21	4
횡성	43	30	2	-	41	28	2,815	2,546	13	-	11	2
영월	46	31	2	-	44	29	2,456	2,148	15	-	12	3
평창	48	31	2	2	44	27	2,827	2,500	17	1	13	3
정선	45	30	2	-	43	28	2,517	2,177	15	1	13	1
철원	36	23	2	-	34	21	3,695	3,361	13	1	9	3
화천	35	21	2	-	33	19	1,858	1,567	14	1	12	1
양구	27	18	2	-	25	16	1,780	1,641	9	-	9	-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학생 수		유치원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단설	병설	사립	
충청 북도	인제	41	26	2	-	39	24	2,592	2,227	15	1	13	1
	고성	32	21	2	-	30	19	1,470	1,289	11	-	10	1
	본청	122	122	13	13	96	96	50,164	50,164	-	-	-	-
	청주	289	149	8	-	281	141	84,313	74,247	140	10	73	56
	충주	108	62	5	1	102	56	17,979	15,760	46	3	31	12
	제천	77	42	4	1	72	37	11,485	9,735	35	2	21	12
	보은	40	25	3	1	36	21	2,018	1,778	15	-	15	1
	옥천	40	23	3	1	36	19	3,833	3,291	17	1	12	4
	영동	41	27	3	1	37	23	3,014	2,663	14	1	11	2
	진천	42	26	3	1	38	22	7,372	6,622	16	2	12	2
	괴산증평	54	34	3	2	49	29	5,181	4,699	20	-	18	2
	음성	61	36	3	2	57	32	7,898	6,863	25	3	18	4
단양	35	23	3	1	31	19	1,774	1,641	12	1	11	-	
충청 남도	본청	152	152	15	12	125	125	66,621	66,621	-	-	-	-
	천안	227	113	6	1	220	106	70,691	59,591	114	5	53	56
	공주	82	47	2	3	77	42	8,116	6,867	35	1	26	7
	보령	81	48	2	2	77	44	8,192	7,111	33	2	28	3
	아산	131	71	5	1	125	65	37,049	31,299	60	3	33	24
	서산	93	51	3	1	89	47	17,015	14,950	42	1	28	13
	금산	44	28	2	1	41	25	3,695	3,381	16	1	14	1
	논산계룡	98	58	3	-	95	55	15,245	13,907	40	1	30	9
	부여	65	38	2	1	62	35	4,323	3,799	27	1	22	4
	서천	49	30	2	1	46	27	3,132	2,887	19	-	18	1
	청양	35	22	2	1	32	19	1,751	1,488	13	1	10	2
	홍성	63	36	2	1	60	33	9,995	8,537	27	3	18	6
	예산	64	38	2	1	61	35	5,230	4,580	26	1	21	4
	태안	58	35	2	1	55	32	4,151	3,779	23	-	22	1
	당진	85	49	3	1	81	45	16,153	1,457	36	2	28	6
전라 북도	본청	167	167	12	12	143	143	63,502	63,502	-	-	-	-
	전주	243	118	6	1	236	111	70,087	59,549	125	4	41	80
	군산	151	81	3	1	147	77	27,356	23,460	70	3	41	26
	익산	174	89	3	-	171	86	28,116	23,955	85	1	51	33
	정읍	98	57	2	1	95	54	9,333	8,179	41	1	33	7
	남원	72	44	2	1	69	41	6,689	6,163	28	1	25	2
	김제	91	51	2	-	89	49	6,270	5,427	40	1	34	5
	완주	84	47	2	1	81	44	9,037	7,655	37	2	27	8
	진안	38	26	2	1	35	23	1,487	1,298	12	1	11	-
	무주	28	19	2	1	25	16	1,736	1,534	9	1	8	-
	정수	27	19	2	1	24	16	1,610	1,427	8	1	7	-
	임실	42	28	2	2	38	24	1,634	1,449	14	1	13	-
	순창	40	25	2	1	37	22	1,949	1,743	15	1	14	-
	고창	60	38	2	1	57	35	3,908	3,547	22	1	19	2
	부안	63	38	2	-	61	36	3,550	3,079	25	1	21	3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학생 수		유치원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사립	
										단설	병설		
전라 남도	본청	181	181	16	14	151	151	59,323	59,323	-	-	-	-
	목포	115	57	5	-	110	52	27,147	23,455	58	3	30	25
	여수	173	98	5	-	168	93	25,891	22,638	75	2	52	21
	순천	134	71	5	-	129	66	29,328	25,536	63	4	36	23
	나주	72	43	2	1	69	40	9,219	7,749	29	5	18	6
	광양	86	48	5	1	80	42	15,168	13,637	38	1	25	12
	담양	39	24	2	1	36	21	2,489	2,163	15	-	14	1
	곡성	22	14	2	1	19	11	1,632	1,483	8	1	7	-
	구례	31	19	2	1	28	16	1,686	1,514	12	-	11	1
	고흥	59	38	2	-	57	36	3,389	3,104	21	1	18	2
	보성	52	33	2	2	48	29	2,222	2,222	19	-	17	2
	화순	49	30	2	1	46	27	4,984	4,519	19	-	16	3
	장흥	43	27	2	1	40	24	2,598	2,271	16	-	14	2
	강진	39	25	2	-	37	23	2,246	2,118	14	-	14	-
	해남	58	36	2	1	55	33	4,876	4,342	22	1	18	3
	영암	50	32	3	1	46	28	4,229	3,756	18	1	14	3
	무안	53	32	2	1	50	29	7,519	6,696	21	2	16	3
	함평	34	22	2	1	31	19	1,814	1,683	12	-	11	1
	영광	45	29	2	1	42	26	3,907	3,505	16	1	13	2
	장성	38	22	2	-	36	20	3,333	2,827	16	1	12	3
완도	66	42	3	-	63	39	3,717	3,129	24	1	21	2	
진도	40	27	2	1	37	24	1,999	1,760	13	-	11	2	
신안	72	50	2	-	70	48	1,591	1,390	22	-	22	-	
경상 북도	본청	225	225	15	11	199	199	80,441	80,441	-	-	-	-
	포항	226	111	6	1	219	104	48,926	40,511	115	1	56	58
	경주	131	69	3	1	127	65	20,818	17,647	62	1	43	18
	김천	85	47	2	-	83	45	11,918	9,710	38	4	23	11
	안동	92	51	3	1	88	47	15,338	13,059	41	2	30	9
	구미	184	81	4	-	180	77	51,399	40,975	103	2	37	64
	영주	59	32	2	-	57	30	8,615	7,588	27	-	19	8
	영천	61	38	2	1	58	35	6,153	5,426	23	1	19	3
	상주	86	51	2	1	83	48	7,355	6,053	35	1	29	5
	문경	59	33	2	2	55	29	5,204	4,404	26	1	18	7
	경산	114	50	3	-	111	47	23,616	19,206	64	2	26	36
	군위	24	16	2	1	21	13	831	714	8	-	8	-
	의성	47	31	2	1	44	28	2,019	1,849	16	-	15	1
	청송	28	20	2	1	25	17	1,235	1,019	8	-	8	-
	영양	23	15	2	1	20	12	895	786	8	-	7	1
	영덕	33	22	2	1	30	19	1,957	1,822	11	-	10	1
	청도	35	21	2	2	31	17	2,030	1,725	14	-	11	3
	고령	27	18	2	1	24	15	1,944	1,774	9	-	7	2
	성주	40	25	2	1	37	22	2,010	1,821	15	-	14	1
	칠곡	68	35	2	1	65	32	11,974	10,137	33	1	20	12

구분	관할 처리과 총합		청 내 처리과 수	직속 (소속) 기관 수	각급학교 수		학생 수		유치원 수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유치원 포함	유치원 미포함	계	공립 단설	병설	사립	
	예천	37	23	2	1	34	20	2,369	1,937	14	1	11	2
	봉화	44	27	2	1	41	24	1,654	1,482	17	-	16	1
	울진	46	30	2	1	43	27	3,395	3,140	16	-	16	-
	울릉	18	12	2	1	15	9	534	416	6	-	5	1
경상 남도	본청	245	245	17	23	205	205	104,519	104,519	-	-	-	-
	창원	384	186	9	1	374	176	104,547	87,014	198	5	89	104
	진주	126	75	4	5	117	66	34,292	30,075	51	2	28	21
	통영	72	42	2	2	68	38	13,665	11,877	30	2	17	11
	사천	56	36	2	3	51	31	10,223	9,313	20	2	10	8
	김해	191	100	7	3	181	90	62,431	52,841	91	2	46	43
	밀양	61	36	2	2	57	32	7,433	6,429	25	1	18	6
	거제	119	62	3	2	114	57	31,001	25,867	57	1	28	28
	의령	32	22	2	1	29	19	1,366	1,206	10	1	9	-
	함안	51	30	2	1	48	27	6,277	5,406	21	1	13	7
	창녕	54	33	2	3	49	28	3,893	3,349	21	1	16	4
	양산	125	59	4	2	119	53	37,694	30,045	66	1	28	37
	고성	48	30	2	1	45	27	3,541	3,269	18	1	17	-
	남해	38	28	2	2	34	24	2,372	2,213	10	1	9	-
	하동	47	32	2	2	43	28	2,575	2,433	15	1	14	-
	산청	35	22	2	3	30	17	1,806	1,643	13	-	13	-
	함양	35	23	2	2	31	19	2,665	2,337	12	1	10	1
	거창	46	30	2	1	43	27	5,121	4,578	16	1	13	2
	합천	50	33	2	2	46	29	2,270	2,001	17	1	15	1
	제주특별 자치도	본청	55	55	14	8	33	33	21,541	21,541	-	-	-
제주시		187	112	6	2	179	104	50,541	45,651	75	-	58	17
서귀포시		111	67	4	2	105	61	14,958	13,751	44	-	39	5

※참고자료: 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2018년 통계 ‘[나이스 교육통계] 전국 학교 개황’ 자료.

